재 무 회 계 (원 리)

제8장 무형자산과

1. 영업권
2. 영업권 외의 무형자산

제1절 영업권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이란?

물리적 형체는 없으나 미래경제적효익이 장기간 기업에 유입되리라고 기대되는 자산

영업권 (Goodwill) 의 개념

- 기업전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자산 (영업권 또는 권리금)
- 경제적으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영업권의 원가

• 영업권(무형자산)에 대한 원가 측정치 : 사업결합 시, 취득기업이 피취득기업에게 지급하는 이전대가(consideration transferred, 취득대가)가 식별가능한 취득자산(assets acquired)과 인수부채 (liabilities assumed)의 공정가치 순액(순자산 공정가치)을 초과하는 금액

▶ 영업권의 원가(취득원가) = 이전대가 (자산·부채의 취득대가)
- 피취득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 위 원가 측정치가 음수인 경우 :
염가매수차익(gain on a bargain purchase;
종전의 부(負)의 영업권 negative goodwill) 발생.

- 이때에는 취득기업이 모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식별에 대한 정확성 재검토.
추가적 자산이나 부채 있다면 인식.
- 그 이후에도 계속 남는 차익은 취득일에 당기손익(염가매수차익) 으로 인식.

▶ 순자산의 공정가치

= 식별가능 자산의 공정가치 합계 – 식별가능 인수부채의 공정가치 합계

• 과거 피취득기업의 재무제표에서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 :

순자산의 공정가치 산정

– 피취득기업의 자산·부채는 대부분 역사적원가 기준에 따라 기록되어,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피취득기업은 이제 계속기업으로서 기업실체를 유지하지 않으므로 역사적원가 기준의 적용이 더 이상 의미 없음.

유의 :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바로 인수대가가 되는 것 아님.

▶ 이전대가 (consideration transferred, 취득대가)

=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의 취득일 공정가치

+ 취득자가 피취득기업의 전 소유주에 대해 부담하는 부채

+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공정가치

예 1 <사업결합과 영업권의 취득>

모회(주) : 20×1년초 자회(주) 주주에게 ₩4,300,000 현금을 지급하고 자회(주)를 인수, 합병. 합병 직전 자회(주)의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
단, 자회(주)는 상각이 완료된 특허권 보유: 공정가치 ₩220,000.
합병일 현재, 모회(주)는 영업권을 얼마로 기록해야 하는가? 그 인수와 관련하여 분개?

재무상태표 – 20×1년 12월 31일 현재

자회(주)

자 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부채·자본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 금	₩300,000	₩300,000	유동부채	₩800,000	₩800,000
매출채권	420,000	420,000	자 본 금	500,000	–
재고자산	510,000	902,000	이익잉여금	1,530,000	–
유형자산	1,600,000	2,500,000			
특허권(미기록)	–	220,000		–	–
자산총계	₩2,830,000	₩4,342,000	부채와 자본총계	₩2,830,000	

[해설] 순자산의 공정가치 = 자산의 공정가치 – 부채의 공정가치
= ₩4,342,000 – ₩800,000 = ₩3,542,000
영업권 = 인수대가 ₩4,300,000 – 순자산의 공정가치 ₩3,542,000 = ₩758,000

모회(주) : 20×1년초 자회(주) 주주에게 ₩4,300,000 현금을 지급하고 자회(주)를 인수, 합병. 합병 직전 자회(주)의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
단, 자회(주)는 상각이 완료된 특허권 보유: 공정가치 ₩220,000.
합병일 현재, 모회(주)는 영업권을 얼마로 기록해야 하는가? 그 인수와 관련하여 분개?

예 1 풀이

[분 개]

(차)	현 금	300,000	(대)	유동부채	800,000
	매출채권	420,000		현 금	4,300,000
	재고자산	902,000			
	유형자산	2,500,000			
	특허권	220,000			
	영업권	758,000			

영업권 상각과 손상검사

내용연수 상각

- 용역잠재력으로서의 영업권은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므로,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상각해야 한다는 것.
-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을 배분함으로써 수익·비용대응이 적절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
  → 종전 기업회계기준: 20년 이내에 매기 정액법 상각

무상각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임.

손상검사

- 영업권 상각 않는 대신, 영업권에 대해 최소한 매 회계연도마다 손상검사(impairment test)해야 함.
  또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만한 사건이나 기타 환경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함.
  → 최초인식 후, 영업권은 (원가 – 손상차손누계액)으로 측정.

재 무 회 계 (원 리)

제8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1. 영업권
2. 영업권 외의 무형자산
3. 투자자산

제2절 영업권 외의 무형자산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개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물리적 실체(physical substance)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identifiable non-monetary assets)

▸ 무형자산의 정의 (definition)

① 식별가능성 (identifiability)
② 자원에 대한 통제가능성 (controllability)
③ 미래 경제적 효익 가능성 (probable future economic benefits)

▸ 자산 인식기준 (recognition criteria)

①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 인식

- 항목이 해당 정의와 자산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는 무형자산 취득 또는 내부적 창출 위해 최초 발생한 원가 (initial costs)와, 후속원가(subsequent costs) 모두에 적용.

(1)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_

▸ 식별가능성 (identifiability) : 영업권과 구별하게 하는 요건

[참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 :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고 분리하여 인식될 수 없는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 등)을 기대하여 취득자가 지급하는 대가임.

▸ 무형자산 정의 상 식별가능성 조건 :

자산이 (1) 분리가능하거나,
(2)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충족됨.

위 (1) : 해당 자산이 기업에서 분리 또는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individually) 또는 관련 계약, 자산,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되거나 임대될 수 있다는 의미.

위 (2)의 경우 : 권리의 이전가능(transferable)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의무로부터의 분리가능(separable)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2) 무형자산의 통제가능성_

▸ 기업이 자산을 통제(control)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

– 그것은 그 기초가 되는 자원(underlying resource)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이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

▸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 : 일반적으로 강제가능 법적 권리에서 나옴.

▸ 그러나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미래경제적효익 통제가 가능하므로,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님.

(예) 시장·기술에 대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 제약, 종업원의 법적 기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면,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것임.

(3)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 제품 매출, 원가절감 또는 자산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하여 기업에 유입.
(예)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 사용으로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

▸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평가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

▸ 무형자산이 유형자산과 다른 점 : 형체 없고,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고도의 불확실성이 존재

⇨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측정한 것 = 자산의 평가액.
그러므로 무형자산의 평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

▸ 제2장에서 설명했듯이, 회계정보는 목적적합성 외에 신뢰성 또한 중요하므로, 아무리 거액의 무형자산이더라도 신뢰성 있는 측정값을 구할 수 없다면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수 없다.

무형자산(영업권)의 종류

▸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무형자산 가능 항목

(예)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영화필름,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의 충성도, 시장점유율, 판매권 등

- 이 모든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형자산은 아니다.
  즉, 미래경제적효익 위한 지출이라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 시에 또는 내부적 창출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사업개시비용, 교육훈련비, 광고 및 판매촉진비, 사업이전비 등)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그러나 이러한 항목을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에 인식하는 영업권의 일부를 구성.
-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항목에 대한 지출 :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 불가.

1)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취득)

▶ 최초인식의 두 경우 :

- 외부에서 구입 : 개별적 또는 사업결합
- 내부적으로 창출

(1) 외부구입 무형자산

▶ 자산의 정의를 충족함 : 유형자산처럼 취득원가로 측정.

-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의 경우처럼,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취득원가의 인식을 중지 (cease).

(1) 외부구입 무형자산

① 개별 취득 (separate acquisition)

- 자산으로 인식.

[이유] 개별 취득에 지급하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그 무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봄.
(따라서 이 경우,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은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봄)

취득원가의 구성 :

① 구입가격 – (매입할인, 리베이트) + (수입관세, 제세금)

②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종업원급여, 전문가 수수료, 검사 시 발생 원가 등)

*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 안 되는 항목 :

– 새로운 제품·용역의 홍보원가(광고와 판매촉진활동 원가 등),

– 새 지역·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수행 시 발생하는 원가(교육훈련비 등),

– 관리원가 및 기타 일반간접비에 대한 지출 등.

(1) 외부구입 무형자산

②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인수·합병 등 사업결합으로 인해 취득기업이 상표권,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그 취득원가로 함.

– 공정가치 : 해당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확률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 자산인식기준 중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봄.

–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
예) 연구·개발 프로젝트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

⇨ 취득자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① 인식기준 : 연구와 개발

- 자산의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움.

⇦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식별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여부와 그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 회계기준 :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

연구개발 관련 지출 중,

- 연구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 : 발생 시점에 비용 인식 ;
-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 :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식별가능하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demonstrate)할 수 있다면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① 인식기준 : 연구와 개발

- 구체적으로 다음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

(1)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availability)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전체적 사업개발에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② 취득원가

- 내부적 창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 그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

  -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 내부적 창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접 관련 원가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② 취득원가

예제 2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인식

- 남백바이오텍(주)은 20x1년 1월 2일 R&D 활동과 관련 다음과 같이 지출.
  - 바이오종합캡슐의 제품화를 위한 기초적 연구: ₩40,000
  - 바이오종합캡슐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20,000
  - 바이오종합캡슐 분석기: ₩90,000
- 이 지출 중 바이오종합캡슐 분석기는 상품화의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서 수익창출의 가능성을 거의 확실하게 하는 것.
- 다음의 관련 거래에 대해 분개하시오.

(차) 연구비(비용)	40,000	(대) 현 금	150,000
경상개발비 (비용)	20,000		
개발비(무형자산)	90,000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② 취득원가

• 무형자산과 관련된 최초(취득) 지출의 자산/비용 처리 요약

<table>
<tr><td rowspan="4">무형자산 관련 최초 지출(취득)</td><td rowspan="3">무형자산 원가 구성</td><td>외부 개별 구입</td><td>인식기준 충족 → 구입가격이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일부</td></tr>
<tr><td>사업결합으로 구입</td><td>당해 항목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td></tr>
<tr><td>내부 창출</td><td>개발 관련 지출이 미래경제적효익 창출 가능성을 제시</td></tr>
<tr><td colspan="2">발생시점에 비용처리</td><td>위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한 것</td></tr>
</table>

2)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의 측정

▶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 (유형자산 경우와 유사).

- 재평가모형 적용 경우 :
  - 재평가에 활성시장(active market)에서의 공정가치를 사용.
  - 주기적인 재평가 수행 :
    재무상태표일의 자산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한 차이 없도록.
  - ① 취득원가 아닌 금액으로의 무형자산 최초 인식 불가
    ②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재평가는 불가

▶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의 징후(indications) 여부 검토

- 그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이 추정금액이 자산의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손상차손(impairment loss)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
-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 회계처리 : 유형자산 경우에 준하여 처리.

3) 무형자산의 상각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depreciation) 처럼,

내용연수가 유한한(finite)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상각 (amortization) 통해 체계적으로 비용화.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여러 요인(다음 화면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그러나, 내용연수가 비한정(非限定)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함.

'비한정'(indefinite)이라는 용어는 '무한'(infinit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음을 뜻함.

(1)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 유형자산 경우와 유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classified as held for sale)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때 중지.

⇨ • 유형자산 경우처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도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 다양한 방법 중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반영해 선택하고, 예상되는 그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마다 일관성 있게 적용.

⇨ •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

⇨ • 각 회계기간의 상각액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

(2) 잔 존 가 치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 원칙적으로 영(₩0)

단, 다음의 ⑴과 ⑵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영(₩0) 아님.

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commitment) 있음.

⑵
무형자산의 활성시장(active market)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
㈎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잔존가치 결정 가능.
㈏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존재할 가능성 높음.

경제적 내용연수 종료시점 이전에 그 자산의 처분 기대를 나타냄.

예제 3 무형자산의 상각

- 앞서 [예제 2]의 남백바이오텍(주) : 20x1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한 바이오종합캡슐 분석기 지출액 ₩90,000에 대해 6년에 걸쳐 상각하기로 함.
- 동 무형자산 관련, 제3자가 이를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나 관련 활성시장은 없음.
- 20x1년 12월 말 결산일에 필요한 수정분개를 제시하시오.

(차) 개발비상각비	15,000	(대) 개발비상각누계액	15,000

▸ (₩90,000 - 잔존가치 ₩0) / 6년.

(3)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검토 및 추정의 변경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검토

-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
-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상각방법을 변경.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
- 위 변경은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으로 회계처리.

▶ 무상각 무형자산 : 사건과 상황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

-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3)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검토 및 추정의 변경

▶ 무형자산의 상각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의 차이점

1 무형자산 : 상각이라는 표현 사용.

유형자산 : 감가상각 표현 사용.

2 유형자산 : 다양한 감가상각방법 사용.

영업권 외의 무형자산 : 소비되는 형태를 결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 사용.

추정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 임.

4) 무형자산의 제거

-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 유형자산처럼, 처분될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derecogntion).

- 순매각금액(처분비용 차감 후의 매각대금) – 장부금액 = 무형자산처분(제거)손익
  이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